

수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체육관광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 회신(수영장업 위생·안전 기준)

1.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관광과-25792(2025.11.13.)호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과 관련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에서는 수영장업의 경우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안전하고 올바른 운동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지도자는 단순히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에만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 ‘운동의 지도가 필요한 자’ 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간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자유강습 시간의 경우, 개별 이용자가 지도 목적의 운동을 수행하거나 지도자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상시 배치되어 이용자의 운동 방법 및 안전 수칙을 지도·관리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유강습 시간에도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자유수영'이 이용자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운동을 수행하는 환경이므로 체육지도자가 수영조 내에서 상시 지도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수영 시간 중에도 운동의 지도나 이용자 문의에 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육지도자는 시설 내에 근무하며 이용자에게 필요한 안내와 관련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위의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 의무는 모두 이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와 법령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의 검토 의견은 귀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내용)를 기초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 및 관점,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